

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: 2012.12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,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산업자문" 이라 함은 대원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,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(이하 "산업체등" 이라 한다)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(기술지도, 경영지도, 디자인지도 등)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1.12.01.>
2. "산업교원"이라 함은 대원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3. "산업자문료"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대원대학교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 이라 한다)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산업교원 요건)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한다.
<개정 2021.12.01.>

제4조(산업자문 방법 등)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-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.
- ③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산업자문료 납부)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산업자문 배정 산업교원과 결정한다.
- 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.

제6조(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) ① 산업자문료의 배분은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
게 80%, 산학협력단에 20%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수시로 정산하여 분배 지급한다.

제7조(실적평가반영)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승진임용 및 재계약임용시
실적 및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8조(기타사항)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서식 제2호><개정 2023.10.16.>

산업자문 결과보고서			
지원분야 (해당분야 선택)	이·공학기술자문 / 경영지원 / 디자인 / 컨설팅		
신청기관(업체)명			
자문일시(기간)	20 . . . ~ 20 . . . (총 시간)	산업자문료	(원)
산업자문 주제			
자문 내용 및 결과			
위의 산업자문 결과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.			
업체명:		대표:	(인)